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9. 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 9. 10.

다. 상정일자 :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9. 9. 2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김경숙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(안 제6조)
- 2) 보훈예우수당 대상 변경 및 타 조례 중복조항 삭제(안 제8조)
- 3) 위문금 지급 대상의 변경(안 제9조)
- 4) 참전명예수당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최종익 전문위원)

가. 제안경위 및 개정취지

-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.9.9. 제출되어, 의안번호 제124호로 2019.9.10.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임.
- 개정취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할 뿐 만 아니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음.

나. 주요 검토의견

(1)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9.3.28.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¹⁰⁾가 일부개정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‘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.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’의 단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.
- 현재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(40만원: 국 30, 시 10)을 지급받음에 따라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. 이에 참전유공자와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와의 수당 수급액의 차등<표 1>을 줄이고자 설,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에 연 3회 위문금 지급으로 대체하여 왔음.

10) 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 (다만, ~ 아니한다. 삭제)
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.<개정 2018.10.4.>

- 따라서,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설과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정하는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.

〈표 1〉 2019년도 보훈급여금·수당 월지급액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지급대상자	월지급액(최소/최대)	비고
독립유공자	본인(보상금+특별예우금)	2,707 / 8,039	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 수당 별도
	유족(보상금)	708 / 2,531	
국가유공자 및 유족	상이군경(보상금+수당)	453 / 5,219	“
	재일학도의용군인(보상금+수당)	1,282 / 1,556	
	4·19혁명공로자(수당)	311	
	군경유족(보상금+수당)	465 / 1,787	
무공영예수당	무공훈장(인헌~태극, 5단계)	360 / 380	참전명예 중복불가
참전명예수당	참전유공자	300	서울시 10만원 별도
고엽제후유의증수당	후유의증	452 / 934	장애(경도~고도)
	후유증2세환자	1,038 / 1,664	
보훈보상대상	상이자(보상금+수당)	317 / 3,586	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 수당 별도
	유족(보상금)	496 / 1,059	
5·18민주유공	5·18민주유공자	-	서울시 5만원 지급 (보훈예우수당)
특수임무유공	특수임무유공자	-	
사망일시금	독립유공자(본인)	1,127 / 3,268	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별도
	독립유공자(유족)	1,127 / 2,261	
	상이군경	1,127 / 1,704	
	재일학도의용군	1,127	

(출처: 국가보훈처)

(2)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과 광복절에는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, 호국보훈의 달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에 위문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에, 안 제6조의 예산지원에서 독립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, 그리고 제8조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조문을 삭제하였음.

제9조의 위문금에서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주요 조문은 상위법인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과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에 근거한 바,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구청장이 제출한 참전명예수당 비용추계를 보면 1인지급액 2만원부터 5만원까지로 구분하여 1년차 추계 시 적게는 2억 1800만원, 많게는 7억 3950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한 적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